

한우 ICT 융복합 지원

▶ 이 사업은 중복·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전라남도	축산정책과	팀 장 김태원 담당자 박애연	061-286-6520 061-286-6525

- 한우 개체 관리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ICT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 확립

I 추진방향

-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, 발정탐지기 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한우 개체관리 할 수 있는 ICT 장비 지원
- 국비 보조사업(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)에 용자금 일부 지방비 (도 및 시·군비) 지원

II 추진계획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량 및 사업비 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
		계	국비 (30%)	도비 (5%)	시군비 (25%)	용자 (20%)	자담 (20%)
한우 ICT 융복합 지원	120호	1,800	540	90	450	360	360

나.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및 축사의 신·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
- 지원조건 : 보조 60%(국비 30, 도비 5, 시군비 25), 용자 20%, 자담 20%
* 용자금은 자담으로 대체 가능

- 사업내용 : '스마트팜 코리아(농정원 운영)'에 등록된 한우 개체 관리를 위한 2개 이상 ICT 장비 지원
 - 개체관리 SW, PC, CCTV, 발정감지장비, 분만알림장비, 축사환경제어장비(컨트롤박스 포함)
 - 축사환경제어장비는 축사환경장비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예시) CCTV + 발정감지장비, CCTV + 축사환경제어장비, 발정감지장비 + 분만알림장비 등
- 지원한도 : (농업경영체 기준) 15백만원/호

2 추진체계

가. 사업주관 : 시장·군수

나.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
다. 대상자 선정

-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비 컨설팅 받은 농가 중 우선순위 및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 선정
- 지원 장비를 2개이상 동시(개체관리 S/W, CCTV, 발정탐지장비, 분만알림장비, 환경제어장비)에 도입하는 농가만 선정. 단, PC의 경우 단일 지원이 불가함으로 단일장비로 볼 수 없음.
-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(15백만원)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,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
 - ※ 지원횟수는 '14년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 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.

라. 우선지원

-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먼저 반영한 후 컨설팅점수를 반영하여 선정

○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

- 1순위 :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,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
- 2순위 :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, 깨끗한농장 지정 농가, HACCP 인증 농가
- 3순위 :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
- 4순위 : 1~3순위를 제외한 사업 신청 농가

마. 지원제외

-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제외
- 무허가 축사 소유자, '20.1.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축산분야 ICT 지원 제외와 동일
- 한우 ICT 지원 횟수, 축산 ICT 지원 횟수를 합산하여 3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당해연도 한우 ICT 사업과 축산 ICT 동일 지원 불가

마. 제품 공급·설치

-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장비
 - 개체관리 S/W, PC, CCTV, 발정감지장비, 분만알림장비, 축사환경 제어장비(컨트롤박스)이외의 장비는 축산 ICT를 통하여 지원
- ICT 융·복합 시설 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, '스마트팜코리아(www.smartfarmkorea.net)에 등록되어야 하고, 농정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
 - 단, CCTV는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없이 지원 가능
- 계약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확인 및 관계 법령 준수

바. 사업비 집행 및 정산

- 사업비 중 자부담 납부 확인은 계좌를 통해 실시
-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, 지원 한도 미만은 실 구입비용으로 정산

- 보조금은 농가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 제출시 시공업체에 지급가능
- 농가 및 시공업체(위임받은 경우)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공정별 사진, 자부담 납부 통장 사본 등 사업비 집행 확인서)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
- 제품선정 협의 등을 통한 공급방법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·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(증빙서류, 현장사진 등 포함)를 활용하여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

사. 사후관리
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장·군수 책임 하에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정기실태조사(연 1회 이상)
- 불공정 거래행위 확인 시, 보조금 전액 회수(농가와 납품업체는 향후 2년간 사업제한)

아. 기타 지침에 없는 사항

-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ICT 융·복합 확산사업 지침 준수

III 행정사항

- 예비사업자 모집 및 신청결과 보고 : '24. 1. 12.
- 본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(서식 1) : '24. 3. 31.
- 사업완료 실적 및 정산보고(서식 2) : '25. 1. 15.

